

제 9 장 시청각 공동제작

제 9.1 조 일반원칙

1. 영화·애니메이션·방송프로그램·게임¹⁾ 및 영상효과를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·경제적 교류 증대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 협정을 숙고하고 협상하는 데 동의한다.

2. 제1항의 공동제작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. 구체적인 공동제작협정은,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인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인도의 정보통신방송부 간에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.

제 9.2 조 범위

제9.1조제2항상 공동제작 협정의 범위는 극장 및 텔레비전·비디오카세트·비디오디스크·디지털 장비(CD, DVD, VOD, 휴대폰 등) 또는 그 밖의 형식에 의하여 배급되는 영화·방송프로그램·게임·영상효과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. 시청각 공동제작의 새로운 형태는 양 당사국간 교환각서를 통하여 공동제작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.

제 9.3 조 혜택

공동제작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각 당사국 영역 내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어야 하고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.

1) 이 장에서 게임은 우연의 결과로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치있는 것을 거는 도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 9.4 조

개정

공동제작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.